

	창업보육센터 규정	제정일	1999. 3.19
		개정일	2022.12. 1
		개정차수	6차
		담당부서	창업보육센터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 및 소재지) 이 보육센터는 동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(이하 “보육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며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캠퍼스 내에 둔다. (개정 2014. 1. 1, 2014.11. 1)

제 2조 (설치목적) 보육센터는 본교 내 예비창업자의 발굴과 창업마인드를 확산하고 창업 및 신기술 보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산·학·연·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기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·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건설한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하여 본교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.

제 3조 (사업) 보육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설지원
 - 가. 개별입주 보육실
 - 나. 공동이용공간(공동작업장, 회의실, 전시실, 상담실 등)
 - 다. 공동이용설비(시제품제작 및 설계용기기, 제어 및 계측기기, 각종 실험기기)
 - 라. 공용사무기기(PC, 워크스테이션, FAX, 프린터 등)
 - 마. 네트워크 지원시설(인터넷, 초고속통신망)
 - 바. 기본 Utility 제공(전기, 수도 등)
2. 기술 및 경영지원
 - 가. 본교 내 교수와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연구
 - 나. 시제품 제작 공동연구
 - 다. 본교 연구소 네트워크 지원
 - 라. 지자체 및 유관기관 창업자금 연계지원
 - 마. 경영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도
3. 인·허가를 비롯한 행정자문 및 지원
4. 본교 내 연구소 및 학부(과) 시설과 장비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
5. 기타 보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 4조 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보육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.

②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14.11. 1)

제 5조 (부서 및 부서장) ①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2.12. 1)

1. 기술지원사항 (개정 2022.12. 1)
 - 가. 입주업체의 기술개발지원 및 경영지도
 - 나.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자금지원 안내
 - 다. 입주업체의 사업계획서 심사분석 및 평가
 - 라. 입주업체의 사업성 및 실적평가
2. 행정관리사항 (개정 2022.12. 1)
 - 가. 입주업체 계약체결 및 관리
 - 나. 시설 및 기자재 관리
 - 다. 예산집행 및 결산
 - 라.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위원회 운영
 - 마. 센터홍보 및 일반행정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② (삭제 2014.11. 1)

제 6조 (연구실)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각종 연구실 등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2.12. 1)

제 7조 (보육센터 요원) ① 보육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, 기술직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보육센터에는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 (신설 2014. 1. 1, 개정 2022.12. 1)

③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고, 매니저에게 업무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 2022.12. 1)

제 8조 (자문위원회) 보육센터의 주요정책 결정자문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 9조 (운영위원회) ① 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중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6인 내외로 구성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15. 6. 1, 2016. 3. 1)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22.12. 1)

⑤ 위원회의 구성은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. (신설 2015. 6. 1)

제10조 (운영위원회 임무)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제2호 및 제3호는 보고사항으로 한다. (개정 2022.12. 1)

1. 센터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기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3. 입주자 심사(사업진행도 평가 포함) 및 졸업에 관한 사항 (개정 2015. 6. 1)
4. 연간 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결과평가 및 환류 (신설 2014. 1. 1)
5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(개정 2014. 1. 1)

제 4 장 재 정

제11조 (재원) ①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본교 지원금, 정부기관 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보육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(개정 2022.12. 1)

② 입주업체의 보육료 등의 재원은 창업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시설유지보수, 입주업체 기술지원, 멘토링, 네트워킹, 사업화지원금 지원, 교육훈련 등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 전용계좌에서 집행한다. (신설 2022.12. 1)

제 5 장 보 칙

제12조 (운영규정 등) 보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운영세칙과 관련법규,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